



제418회국회(정기회)
제7차기획재정위원회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 박수민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4974호)

2024. 11.

기 획 재 정 위 원 회

전문위원 이정은

목 차

I . 개요	1
II . 주요 내용별 검토	3
1. 가산세 미적용 대상 확대(박수민의원안)	3

I. 개요

1. 박수민의원 대표발의안(의안번호 제4974호)

가. 제안경위

(1) 제 안 자 : 박수민의원 등 10인

(2) 제 안 일 : 2024. 10. 28.

(3) 회 부 일 : 2024. 10. 29.

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조세특례제한법」은 국가전략기술사업화시설 투자에 대하여 세액공제 혜택을 부여하고 있고, 공제할 세액 중 해당 과세연도에 납부할 세액이 없거나 같은 법 제132조에 따른 최저한세액에 미달하여 공제받지 못한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이하 “미공제금액”이라 함)은 해당 과세연도의 다음 과세연도 개시일부터 10년 이내에 끝나는 각 과세연도에 이월하여 공제하고 있음.

그러나 국가전략기술 분야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혜택을 시의적절하게 제공할 수 있도록 개선하고 각국 정부가 경쟁적으로 정책적 지원을 확대하고 있는 경제 환경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미공제금액에 대하여는 기존의 이월공제 외에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그 금액을 환급세액으로 보아 환급할 필요가 있음.

이러한 국가전략기술사업화시설 투자의 미공제금액에 대한 환급 특

례를 「조세특례제한법」에 신설함에 따라, 현행법에 따른 과소신고
및 초과환급신고 가산세 부과 예외에 미공제금액 환급 특례를 적용받
은 경우를 추가하려는 것임(안 제47조의3제4항제4호).

II. 주요 내용별 검토

1. 가산세 미적용 대상 확대(박수민의원안)

현 행	개 정 안
☐ 과소신고·초과환급신고가산세 미적용 (제47조의3제3항) ☐ 다음의 경우 과소신고하거나 초과신고한 부분에 대해서는 제1항 또는 제2항의 가산세를 적용하지 아니함 - 신고 당시 소유권에 대한 소송 등의 사유로 상속재산 또는 증여재산으로 확정되지 아니하였던 경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 제18조의2, 제18조의3, 제19조부터 제23조까지, 제23조의2, 제24조, 제53조, 제53조의2 및 제54조에 따른 공제의 적용에 착오가 있었던 경우 등 - 「조세특례제한법」 제24조에 따라 세액공제를 받은 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로 해당 세액공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	☐ 가산세 미적용 대상 확대 - 「조세특례제한법」 제24조에 따라 세액공제를 받거나 같은 법 제144조의2에 따라 미공제금액을 환급받은 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로 해당 세액공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

* 박수민의원안 2024. 10. 28. 발의(의안번호 4974)

☐ 개정안은 함께 제출한 「조세특례제한법」¹⁾의 개정으로 ‘국가전략 기술사업화시설 투자에 대한 환급 특례’가 신설되는 경우, 해당 특례를 적용받은 자가 부득이한 사유로 추후 세액공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에는 다른 과소신고·초과환급신고가산세를

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수민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4973)

부과하지 아니하려는 것임.

- 현행법은 납세의무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국세의 과세표준 신고를 한 경우로서 세액을 과소신고하거나 환급받을 세액을 초과신고한 경우에 ‘과소신고·초과환급가산세’를 부과하고 있으며, 납세의무자가 법정납부기한까지 국세의 납부를 하지 않거나 납부해야 할 세액보다 적게 납부하거나 환급받아야 할 세액보다 많이 환급받은 경우에는 ‘납부지연가산세’를 부과하고 있음.

다만, 일부 사유²⁾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가산세를 적용하고 있지 않은데, 상속재산 또는 증여재산의 평가 방법³⁾ 차이로 인하여 상속세·증여세 과세표준을 과소신고하거나 납부지연한 경우, 신고 당시 소유권에 대한 소송 등의 사유로 상속재산 또는 증여재산으로 확정되지 아니하였던 경우 등 납세자의 고의나 부주의 없는 경우를 열거하고 있음.

2) 「국세기본법」

제47조의3(과소신고·초과환급신고가산세) ④ 제1항 또는 제2항을 적용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와 관련하여 과소신고하거나 초과신고한 부분에 대해서는 제1항 또는 제2항의 가산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상속세·증여세 과세표준을 과소신고한 경우
가. 신고 당시 소유권에 대한 소송 등의 사유로 상속재산 또는 증여재산으로 확정되지 아니하였던 경우
나.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 제18조의2, 제18조의3, 제19조부터 제23조까지, 제23조의2, 제24조, 제53조, 제53조의2 및 제54조에 따른 공제의 적용에 착오가 있었던 경우
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제2항·제3항 및 제66조에 따라 평가한 가액으로 과세표준을 결정한 경우(부정행위로 상속세 및 증여세의 과세표준을 과소신고한 경우는 제외한다)
라. 「법인세법」 제66조에 따라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경정으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3부터 제45조의5까지의 규정에 따른 증여의제이익이 변경되는 경우(부정행위로 인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경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 1의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제2항·제3항 및 제66조에 따라 평가한 가액으로 「소득세법」 제88조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후단에 따른 부담증여 시 양도로 보는 부분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표준을 결정·경정한 경우(부정행위로 양도소득세의 과세표준을 과소신고한 경우는 제외한다)
 2. 「부가가치세법」 제45조제3항 단서가 적용되는 경우
 3. 제1호라목에 해당하는 사유로 「소득세법」 제88조제2호에 따른 주식등의 취득가액이 감소된 경우
 4. 「조세특례제한법」 제24조에 따라 세액공제를 받은 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로 해당 세액공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
- 3)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제2항·제3항 및 제66조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가격이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 재산의 종류, 규모, 거래상황 등을 감안하여 보충적 평가방법을 적용함.

2023년 말 「국세기본법」 개정으로 가산세 미적용대상에 「조세특례제한법」 제24조4)에 따른 ‘통합투자세액공제’에 대하여 세액공제를 받은 이후 부득이한 사유(국가전략기술사업화시설 인정을 전제로 공제받았으나 추후 인정을 받지 못한 경우5))로 해당 세액공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를 추가하였음.

□ 개정안은 이와 같은 선상에서 ‘국가전략기술사업화시설 투자에 대한 환급 특례’를 적용 받은 이후 납세자의 고의나 부주의 없는 사유로 가산세가 부과되는 것을 방지하고자 하는 취지로, 함께 제출한 ‘국가전략기술사업화시설 투자에 대한 환급 특례’를 신설하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수민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4973)의 의결 시에 함께 개정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문 의 처

02)6788-5161

4) 「조세특례제한법」

제24조(통합투자세액공제)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내국인이 제1호가목 또는 나목에 해당하는 자산에 투자(중고품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리스에 의한 투자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는 경우에는 제2호 각 목에 따른 기본공제 금액과 추가공제 금액을 합한 금액을 해당 투자가 이루어지는 과세연도의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만 해당한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다만, 2023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투자하는 경우에는 제3호 각 목에 따른 기본공제 금액과 추가공제 금액을 합한 금액을 공제한다.

5)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7조의2(과소신고·초과환급신고가산세) ④ 법 제47조의3제4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1조제13항 후단에 따라 신성장사업화시설 또는 국가전략기술사업화시설의 인정을 받을 것을 조건으로 그 인정을 받기 전에 세액공제를 신청하여 세액공제를 받았으나, 그 이후 인정 대상 시설의 일부 또는 전부에 대해 그 인정을 받지 못한 경우를 말한다.